

박 우하(건설부 건축과장)

令第76條(積雪荷重)

- ① 積雪荷重은 積雪의 單位重量에 그 地方에 있어서의 垂直最深積雪量을 乘하여 計算하여야 한다.
- ② 前項에 規定하는 積雪의 單位重量은 積雪量 1 센티미터마다, 1 平方미터에 對하여 多雪區域에서는 3 키로그람 以上 기타의 區域에서는 2 키로그람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 ③ 第1項에 規定하는 垂直最深積雪量은 過去の 積雪의 記錄에 따라 狀況이 類似한 區域마다 또는 前項에 規定하는 多雪區域은 建設部長官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市長, 郡守가 規則으로 定한다.
- ④ 지붕의 積雪荷重은 지붕에 눈막음이 있을 때를 除外하고 그 勾配가 30도를 넘고 60도 以下인 境遇에서는 勾配에 따라 第1項의 積雪荷重에 다음 表의 數值를 곱한 數值로 하고 그의 勾配가 60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採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勾 配	30도를 넘고 40도 以下の 境遇	40도를 넘고 50도 以下の 境遇	50도를 넘고 60도 以下の 境遇
積雪荷重에 곱할 數值	0.75	0.5	0.25

- ⑤ 第3項에 規定하는 多雪區域에 있어서의 常時荷重으로서의 積雪荷重 및 風壓力과 同時에 採用할 때에 있어서의 積雪荷重 및 風壓力과 同時에 採用할 때에 있어서의 積雪荷重은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計算한 數值에 各各 70퍼센트 및 35퍼센트에 相當하는 數值로 할 수 있다.
- ⑥ 지붕面에 있어서의 積雪量이 不均等하게 될 憂慮가 있을 때에는 그 影響을 考慮하여 積雪荷重을 計算하여야 한다.
多雪區域을 定하는 基準은 第1項에서 規定하는 垂直最深積雪量이 1미터 以上の 區域에 定하는 것이나 垂直最深積雪量은 過去の 積雪의 記錄에 따라 狀況이 類似한 區域에 建設部長官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市長, 郡守가 規則으로 定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 定한 바 없음으로, 多雪區域內에 建築

을 하고자 할 때에는 積雪荷重을 充分히 考慮하여 構造計算을 하여야 한다.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積雪荷重 W는 다음과 같이 求할 수 있다.

一般地方…… $W=2\text{kg/m}^2 \times \text{垂直最深積雪量 (cm)}$

多雪區域…… $W=w\text{kg/m}^2 \times \text{垂直最深積雪量 (cm)}$

但 W는 區域에 따라 決定되는 數值이다. 第4項에서는 지붕의 勾配가 크면 눈(雪)은 自然落下한다. 눈이 自然落下하는 지붕勾配는 지붕덜거에 따라 다르나 이러한 現象을 考慮하여 積雪荷重의 緩和를 規定하고 있다. 다만, 눈막음이 있어 눈의 自然落下를 防止하고 지붕은 積雪荷重을 減少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5項에서는 實際問題로서 最深積雪量의 눈이 長期間 지붕에 殘存한다고는 볼 수 없다. 記錄에 依하면 1個月 以上 殘存하는 量은 最深積雪量의 約 70% 程度이다. 따라서 多雪區域에서 長期荷重으로서 生覺할 수 있는 積雪荷重은 第1項 乃至 第4項의 規定에서 求한 積雪荷重의 70%까지 低下시킬 수가 있다. 또는 多雪區域에서 暴風을 同時에 生覺할 때에는 눈은 바람에 날리는 것으로 積雪荷重을 35%까지 減해도 좋도록 規定하고 있다. 第6項에서는 지붕面에 있어서의 積雪量이 不均等하게 될 憂慮가 있을 때에는 그 影響을 考慮하여 積雪荷重을 計算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各地方의 最深積雪量 (1970年度 中央觀象台)

地名	最深積雪量		地名	最深積雪量	
	cm	年 月 日		cm	年 月 日
束草	123.8	1970. 2. 21	울릉도	60.4	1970. 12. 19
春川	44.2	1970. 1. 31	仁川	31.4	1970. 1. 31
江陵	109.7	1970. 2. 21	서산	32.0	1970. 1. 7
서울	30.0	1970. 1. 31	淸州	39.0	1970. 1. 31
大田	18.3	1970. 2. 4	光州	9.6	1970. 1. 14
秋風嶺	34.8	1970. 1. 31	釜山	3.8	1970. 2. 4
浦項	20.1	1970. 1. 31	忠武	6.2	1970. 2. 4
群山	28.6	1970. 1. 8	木浦	7.3	1970. 1. 1
大邱	25.0	1970. 1. 31	麗水	2.1	1970. 2. 4
全州	26.7	1970. 12. 3	濟州	3.2	1970. 1. 3
蔚山	10.0	1970. 2. 4	西歸浦	3.7	1970. 1. 2

令第77條(風壓力)

① 風壓力는 速度壓에 風力係數를 곱하여 計算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速度壓은 다음 式에 依하여 計算하여야 한다. 다만, 市長, 郡守는 區域을 指定하고 建設部長官이 그 地方에 있어서의 바람의 狀況에 따라 指定하는 基準에 依據하여 그 數值의 50퍼센트(前條第3項에 規定하는 多雪區域에 있어서는 40퍼센트)에 相當하는 數值 以上의 範圍에서 그 區域에 있어서의 速度壓을 定할 수 있다.

$$q = 50\sqrt{h}$$

이 式에 있어서 h 및 q는 各各 다음 數值를 表示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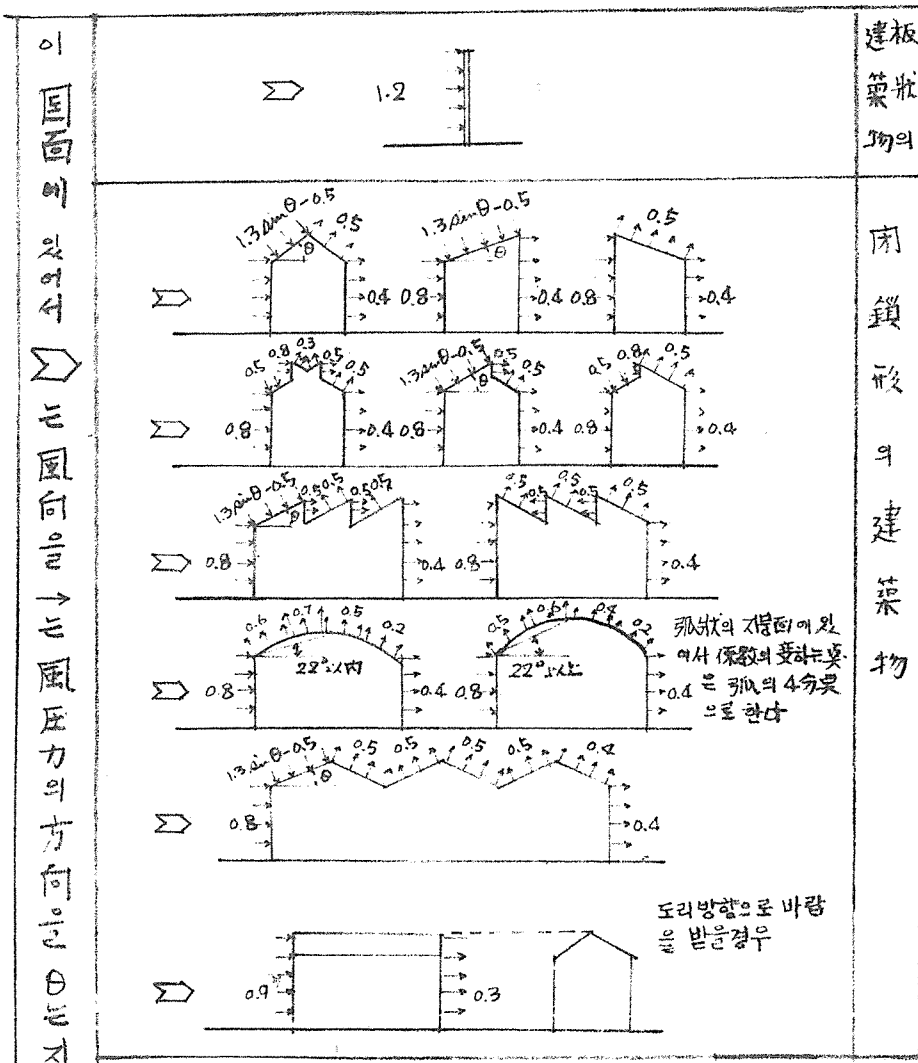
h: 地盤面부터의 높이(單位미터)

q: 速度壓(單位 1平方미터에 對하여 키로그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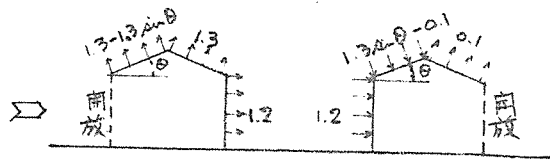
③ 建築物이 海岸, 山上, 絶壁 기타 直接 強한 바람을 받는 場所에 있을 때에는 그 建築物에 對한 速度壓은 1平方미터에 對하여 300키로그람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④ 建築物에 近接하여 그 建築物을 風壓에 對하여 有效하게 遮蔽하는 다른 建築物, 防風林 기타 이 와 類似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方向에 있어서의 速度壓은 前2項의 規定에 依한 數值의 2분의 1까지 減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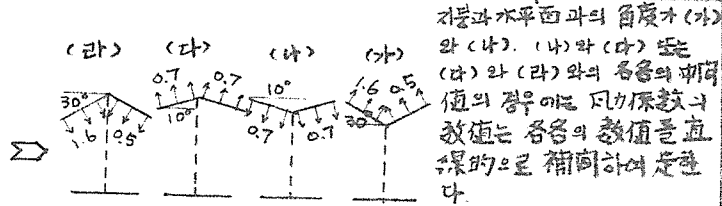
⑤ 第1項의 風力係數는 建築物 또는 工作物의 断面形狀에 따라 다음의 圖面에 揭記하는 數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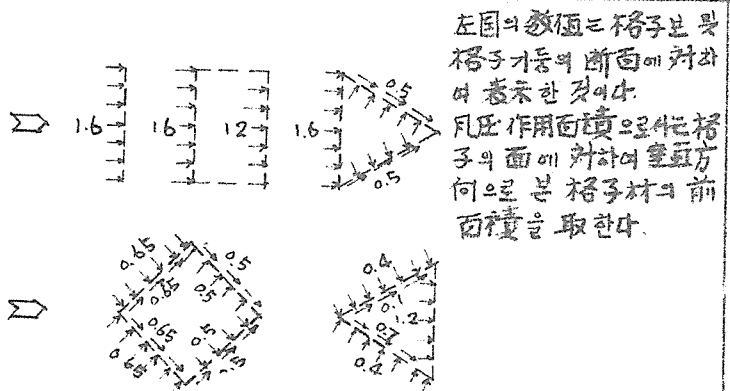
평면과 수평면과의 각도를 각각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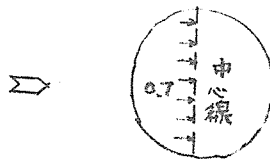
同建築形物



獨立지붕



格子構造物



圓形構造物

第3款 許容應力度

令第78條(木材)

① 木材에 對한 纖維方向의 許容應力度는 다음表의 數値에 依하여야 한다.

許容應力度		長期應力에 對한 許容應力度 (單位 1平方센티미터에 對하여키로그램)			短期應力에 對한 許容應力度 (單位 1平方센티미터에 對하여키로그램)		
		壓縮	引張 또는 벤딩	剪斷	壓縮 또는 벤딩	引張	剪斷
木材의 種類	陸松, 杉松, 아까시아	50	60	4	長期應力에 對한 壓縮引張벤딩, 또는 剪斷의 許容應力度의 各各의 數値의 2倍로 한다.		
	젓나무(樺), 가문비나무(唐松), 日本杉松, 美杉松, 美솔송	60	70	5			

樹	樹種	許容應力度 (單位 1平方센티미터에 對하여키로그램)	許容應力度 (單位 1平方센티미터에 對하여키로그램)	許容應力度 (單位 1平方센티미터에 對하여키로그램)
樹	젓나무, 벗나무, 美松	70	80	6
	落葉松, 赤松, 黑松, 솔송, 日本松, 美松	80	90	7
潤葉樹	밤나무, 물참나무	70	95	10
	느티나무	80	110	12
	떡갈나무	90	125	14

② 堅木으로서 特히 品質이 優良한 것을 비너장등에 使用할 때에는 그 許容應力度를 各各 前項의 表의 數値의 2倍까지 增大할 수 있다.

③ 基礎달뚝, 水槽, 浴室 기타 이와 類似한 常時 濕潤狀態에 있는 部分에 使用할 때에는 그 許容應力度는 各各 第1項의 表의 數値의 70퍼센트에 相當하는 數値로 하여야 한다.

④ 針葉樹材의 許容壓込應力度는 그 纖維方向과

우리나라의 최대 풍속도 및 그 방향

(m/sec)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명													
강릉	속도 방향 나타 난날	36.7 W 58 15	28.3 WSW 58 22	35.5 SW 46 30	25.7 WSW 54 19	24.4 WSW 16 7	26.2 SSW 46 24	16.7 SW 59 18	15.8 WSW 19 29	18.9 W 54 14	21.9 SW 27 23	24.7 WSW 34 2	31.7 W 57 8
서울	속도 방향 나타 난날	15.7 WSW 58 14	16.3 ENE 40 13	15.6 SW 35 15	25.0 W 54 19	17.5 WSW 45 3	14.8 S 49 20	15.2 SW 33 28	15.8 SSE 45 3	16.7 W 54 5	13.4 WSW 36 25	14.7 SW 36 27	14.0 WNW 56 4
인천	속도 방향 나타 난날	23.3 NW 55 9	23.3 NNW 55 10	25.0 WNW 53 25	33.3 NW 59 16	22.5 SSW 41 3	23.7 SW 60 26	26.7 SSW 53 15	35.0 S 54 26	33.8 S 19 3	33.3 WNW 53 9	28.5 N 6 2	23.9 WNW 7 20
울릉도	속도 방향 나타 난날	33.3 E 60 16	26.7 WSW 55 22	43.3 E 52 19	37.5 SW 52 17	30.0 SW 54 13	30.0 E 49 21	37.5 WSW 57 7	34.7 NE 56 17	45.0 SSW 54 14	37.3 E 51 15	29.0 NE 48 16	35.0 NE 51 3
추풍령	속도 방향 나타 난날	18.4 WSW 46 21	17.7 W 56 17	16.7 W 47 21	21.5 W 46 18	20.3 WSW 56 6	14.8 W 43 4	16.8 WSW 40 24	18.2 ENE 41 23	20.0 NNE 59 17	15.3 W 57 17	16.2 W 43 18	16.7 W 42 31
포항	속도 방향 나타 난날	35.0 N 53 18	28.3 NE 51 27	30.3 SSW 52 22	26.2 W 54 19	29.3 SW 56 5	29.8 N 52 8	23.3 N 54 11	33.3 S 60 23	30.7 WSW 54 15	39.8 NNW 51 14	31.0 NNE 54 18	27.7 NNW 52 9
대구	속도 방향 나타 난날	18.7 WNW 49 5	17.3 WNW 49 27	20.7 W 47 2	20.8 W 47 2	20.0 WNW 46 18	16.8 ESE 55 13	18.7 SSE 40 23	19.0 SSE 57 21	25.3 NNE 59 17	17.3 WNW 49 29	17.7 WNW 49 29	21.8 WNW 55 16
전주	속도 방향 나타 난날	11.8 WNW 20 7	14.1 SSE 22 10	17.4 SW 22 23	14.8 W 31 6	15.5 SE 46 7	16.2 ESE 52 4	14.0 SE 54 7	19.0 ES 45 3	12.3 SSE 52 13	14.2 SSE 52 15	16.0 WSW 51 25	12.5 W 46 8
울산	속도 방향 나타 난날	21.3 WNW 59 18	20.5 SSW 38 4	17.8 NW 52 23	19.5 WNW 59 13	16.3 SSW 41 2	19.5 NW 49 21	18.7 SSW 40 24	25.3 SSE 36 27	31.7 ENE 59 17	19.0 WNW 49 29	20.0 N 56 24	23.0 NW 52 3
광주	속도 방향 나타 난날	15.7 WNW 43 11	14.5 NW 45 2	17.0 NW 40 21	17.5 WNW 40 5	15.8 SSE 46 7	16.3 SSW 60 29	25.8 SSE 40 23	26.3 ESE 45 3	13.7 NW 56 10	13.0 NNW 40 25	13.5 NNW 60 26	15.7 W 40 1
부산	속도 방향 나타 난날	25.0 NW 57 30	26.0 NW 57 10	27.8 SSW 45 27	25.0 SSW 56 23	26.7 W 56 5	25.1 SSW 43 3	26.5 SW 53 7	31.4 SW 36 28	34.7 ENE 59 17	23.3 SW 52 22	23.3 NW 56 22	29.0 NW 59 17
목포	속도 방향 나타 난날	33.0 NNW 55 10	35.0 N 55 27	34.2 NNE 55 18	26.9 SW 59 4	23.3 SW 59 4	25.3 S 56 4	39.5 S 40 23	37.5 SE 52 18	31.7 N 59 17	26.7 NNW 58 27	30.0 SSE 58 13	25.8 N 54 2
여수	속도 방향 나타 난날	27.5 NW 57 30	25.0 NE 57 6	29.4 S 56 16	21.7 SW 59 4	25.9 SSW 46 7	26.7 ENE 57 5	22.3 S 48 7	26.7 ENE 59 8	35.5 NE 59 17	20.5 NNE 45 10	20.2 NE 49 23	27.0 WNW 47 30
제주	속도 방향 나타 난날	29.3 S 50 30	25.0 NW 55 20	27.3 WSW 30 12	29.3 SSW 27 20	24.3 S 43 3	21.7 SSW 43 3	30.3 S 40 23	36.1 NNE 33 3	33.5 NNE 59 17	19.7 NW 55 7	25.1 NNW 24 9	25.7 NNW 26 8

加力方向과의 角度에 따라 다음의 表의 數值로 하여야 한다.

纖維方向과 加力方向과의 角度		許容 壓 込 應 力 度
(1)	10度以下	第 1項의 表에 揭記하는 許容壓縮應力度의 數值
(2)	10도를넘고 70度 미만	(1)과 (3)과에 揭記하는 數值를 直線的으로 補間한 數值
(3)	70度以上 90度以下	第 1項의 表에 揭記하는 許容壓縮應力度의 數值의 5分의 1 (土台와 기둥의 맞춤 其他 이들과 類似한 壓込變形에 依하여 構造耐力上 支障을 가져올 憂慮가 없는 맞춤에 있어서는 4分의 1)

⑤ 壓縮材의 許容挫屈應力度는 其의 有效細長比에 따라 다음의 表의 式에 依하여 計算하여야 한다.

$\lambda \leq 100$ 의 境遇	$f_k = f_c (1 - 0.007\lambda)$
$\lambda > 100$ 의 境遇	$f_k = \frac{0.3f_c}{(\frac{\lambda}{100})^2}$
이 表에 있어서는 f_k , f_c , 및 λ 는 各各 다음에 揭記하는 數值를 表示한다. f_k : 許容挫屈應力度 (單位 1平方センチ미터에 對하여 키로그램) f_c : 纖維方向의 許容壓縮應力度 (單位 1平方センチ미터에 對하여 키로그램) λ : 有效細長比	

木材의 許容應力度는 樹種에 따라서 定해져 있으나, 木材의 品質은 無制限으로 나쁜것까지 定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通常使用되고 있는 木材에 對한 것이다. 品質에 對하여서는 數字的으로 規定하고 있지 않으나, 令第 4條에 漠然히 그 品質이 規定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쁜 品質의 木材는 使用하여서는 아니되며, 나쁜 品質의 木材를 使用할 때에는 그 許容應力度を 適當히 低下하여 計算하지 않으면 안된다.

木材의 強度는 含水率이 30% 以上이 되면 含水率이 18% 程度의 強度에 比較하여 約30% 低下된다. 이와 같은 것을 考慮하여 規定한 것이 第 3項이고, 第 4項에는 木材의 壓縮強度는 纖維方向에 對하여 加力方向의 傾斜가 增加함에 따라 減少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令第 79條 (鉄材)

① 鉄材의 許容應力度는 다음 表의 數值에 依하여야 한다.

許容應力度 鐵材의 種類	長期應力에 對한 許容應力度 (單位 1平方センチ미터에 對한 키로그램)						短期應力에 對한 許容應力度 (單位 1平方センチ미터에 對한 키로그램)					
	壓 縮	引 張	벤 딩	剪 斷	側 壓	接 觸	壓 縮	引 張	벤 딩	剪 斷	側 壓	接 觸
一般構造用 鋼材	1,600	1,600	1,600	800	3,000	4,600	長期應力에 對한 壓縮, 引張, 벤딩, 剪斷, 側壓 또는 接觸의 許容應力度의 各各의 數值의 1.5倍로 한다.					
리 넷 트 鋼	—	1,600	—	1,200	—	—						
볼 트	黑 皮	—	800	—	—	—						
	마 감	—	1,000	—	1,000	—						
鑄 鋼	1,600	1,600	1,600	800	3,000	4,600						
鑄 鐵	1,000	—	—	—	—	2,800						
鐵筋콘크리트에 使用하는 鐵筋	1,600	1,600	—	—	—	—						

② 壓縮材의 許容挫屈應力度는 其의 有效細長比에 따라 다음의 表의 式에 依하여 計算하여야 한다.

第 1項에는 鉄材의 許容應力度を 壓縮, 引張, 벤딩, 剪斷, 側壓, 接觸別로 規定하고 있다.

第 2項에는 壓縮材의 許容挫屈應力度는 其의 有效細長比에 따라 式에 依하여 計算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lambda \leq 30$ 의 境遇	$f_k = f_c$
$30 < \lambda \leq 100$ 의 境遇	$f_k = f_c \{1 - 0.4(\frac{\lambda}{100})^2\}$
$\lambda > 100$ 의 境遇	$f_k = \frac{0.6f_c}{(\frac{\lambda}{100})^2}$
本表에 있어서 f_k , f_c , 및 λ 는 各各 다음의 數值를 表示한다. f_k : 許容挫屈應力度 (單位 1平方センチ미터에 對한 키로그램) f_c : 許容壓縮應力度 (單位 1平方センチ미터에 對한 키로그램) λ : 有效細長比	

令第80條(콘크리트)

콘크리트의 許容應力度는 다음의 表의 數値에 依하여야 한다.

長期應力에 對한 許容應力度 (單位 1平方センチ미터에 對한 키로그램)				短期應力에 對한 許容應力度 (單位 1平方センチ미터에 對한 키로그램)			
壓縮	引張	剪斷	附着	壓縮	引張	剪斷	附着
使用하는 콘크리트의 4週壓縮強度의 3分の1이고또한70以下			7	長期應力에 對한 壓縮, 引張, 剪斷 또는 附着의 許容 應力度의 各各의 數値의 2倍로 한다.			

이 規定은 鉄筋콘크리트用 콘크리트는 勿論이고 無筋콘크리트에도 適用되는 것이다.

使用하는 세멘트의 品質은 韓國工業 規格에 適合한 것이야 한다.

令第81條(溶接)

溶接合의 断面에 對한 許容應力度는 다음 表의 數値에 依하여야 한다.

作業의 方向	이음의 形式	長期應力에 對한 許容應力度 (單位 1平方センチ미터에 對한 키로그램)				短期應力에 對한 許容應力度 (單位 1平方センチ미터에 對한 키로그램)				
		壓縮	引張	벤딩	剪斷	壓縮	引張	벤딩	剪斷	
(1)	回轉 지구 포지쇼너等	벗 드	1,400	1,400	1,400	700	短期應力에 對한 壓縮, 引張, 벤딩 또는 剪斷의 許容應力度의 各各의 數値의 1.5倍로 한다.			
(2)	(1) 以外的의 境遇	벗 드	1,200	1,200	1,200	600				
		피렛드	700	700	700	700				

溶接法은 여러가지 種類가 있으나 아쿠溶接 및 鉄筋을 이음할 때 使用되는 벗드溶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1)은 溶接을 할 때에 있어서 良好한 溶接이음을 얻을 수 있는 設備, 環境下에 下向溶接을 할 때이고 (2)는 一般的으로 現場溶接을 할 때이며 또한 (1)에 의한 下向溶接 以外的의 溶接을 할 때를 말하고 있다.

令第82條(地盤 및 基礎말뚝)

① 地盤의 許容應力度는 荷重試驗에 依하여 定하는 境遇 以外에 다음 數値에 依하여야 한다.

地 盤		長期應力에 對한 許容應力度 (單位 1平方미터에 對한 톤)	短期應力에 對한 許容應力度 (單位 1平方미터에 對한 톤)
硬岩盤	花崗岩, 閃綠岩, 片麻岩, 安山岩 等の 火成岩 및 굳은 岩 等の 岩盤	400	長期應力에 對한 許容應力度의 各各의 數値의 2倍로 한다
軟岩盤	板岩, 片岩 等の 水成岩의 岩盤	250	
		負岩, 土丹岩 等の 岩盤	100
자		30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20	
모래섞인 점토 또는 톱토		15	
모래 또는 점토			

② 前項의 表에 揭記하는 地盤 以外的의 地盤에 對하여는 各各 類似한 地盤에 準하여 定하여야 한다.

③ 基礎말뚝의 許容支持力은 荷重試驗에 依하여 定하는 境遇外에는 各各 다음의 表의 式에 依하여 計算한 數値 以下로 하여야 한다.

말뚝 박기의 方法	長期應力에 對한 許容支持力	短期應力에 對한 許容支持力
鎚에 依한 境遇	$R = \frac{0.18W(H-H')}{S-S'} \cdot \frac{W}{W+P}$	長期應力에 對한 許容支持力의 各各의 境遇에 있어서의 數値의 2倍로 한다.
單動汽鎚에 依한 境遇	$R = \frac{0.225W(H-H')}{S-S'} \cdot \frac{W}{W+P}$	
複動汽鎚에 依한 境遇	$R = \frac{0.25(F-F')}{S-S'} \cdot \frac{W}{W+P}$	

本表에 있어서 R, W, P, H, F, S, H', F', 및 S'는 各各 다음의 數値를 表示한다.

R : 말뚝의 許容支持力(單位 톤)

W : 鎚의 重量(單位 톤)

P : 말뚝의 重量(單位 톤)

H : 鎚의 落下高(單位 센티미터)

F : 複動汽鎚의 境遇의 打擊에너지(單位 톤, 센티미터)

S : 말뚝의 最終 貫入量(單位 센티미터)

H' : 말뚝의 最終 貫入量 S를 測定한 後 말뚝의 貫入量 S'가 可能한 限 적게 되도록 鎚擊하였을 때의 鎚의 落下高(單位 센티미터)

F' : 말뚝의 最終 貫入量 S를 測定한 後 말뚝의 貫入量 S'가 可能한 限 적게 되도록 鎚擊하였을 때의 複動汽鎚의 鎚擊에너지(單位 센티미터)

S' : 말뚝의 最終 貫入量 S를 測定한 後 S'의 落下高로서 또는 F'의 鎚擊에너지로서 말뚝을 박은 境遇에 있어서의 貫入量(單位 센티미터)

地盤의 許容應力度는 荷重試驗, 土質試驗 또는 地下探查의 結果에 따라 定하 것이 原則이나 簡易

한 方法으로서 地盤의 種別에 따라 許容應力度를 定하고 있다.

基礎構造는 建縮物의 規模, 重量, 要度에 따라 地盤調査를 하여 地層과 各地層의 物理的, 力學的性質을 判斷하여 設計를 하여야 한다.

第3項에서는 基礎말뚝의 許容支持力을 規定한 것으로서 簡易計算法으로서 土質의 種別에 關係없이 算式이 規定되어 있다. 不同沈下等에 對해서 萬全을 期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荷重試驗과, 土質에 따라 耐力計算에 依해서 檢討할 必要가 있다.

法第18條(居室의 採光 및 換氣)

① 居室의 窓, 기타의 開口部로서 採光을 爲한 部分의 面積은 그 居室의 바닥面積에 對하여 住宅에 있어서는 7分之 1以上, 學校, 病院, 診療所, 寄宿舍 또는 旅館에 있어서는 5分之 1 乃至 10分之 1의 範圍內에서 大統領令의 定하는 比率 以上, 기타 建築物에 있어서는 10分之 1以上이어야 한다. 다만, 映畫館, 劇場이나 地下의 工作物內에 設置된 事務所, 店舖 기타 이와 類似한 것의 居室에 있어서 相當한 照明裝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居室의 窓 기타 開口部로서 換氣에 必要한 部分의 面積은 그 居室의 바닥面積에 對하여 20分之 1以上이어야 한다. 다만, 相當한 換氣裝置를 하여 衛生上 支障이 없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隨時로 開放할 수 있는 미다지로 區劃된 2個의 居室은 前2項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1個의 居室로 본다.

令第11條(居室의 採光)

法第18條第1項에 規定하는 學校, 病院, 診療所, 寄宿舍 또는 旅館에 있어서의 居室의 窓 기타의 開口部로서 採光을 爲한 部分의 面積의 바닥面積에 對한 比率은 다음의 表의 比率 以上이러야 한다.

居 室 的 種 類		比 率
(1)	國民學校, 中學校 또는 高等學校의 教室	5分之 1
(2)	病院 또는 診療所의 病室	7分之 1
(3)	寄宿舍의 寢室, 또는 旅館의 宿泊室	7分之 1
(4)	學校, 病院, 診療所, 寄宿舍 또는 旅館 기타의 居室	10分之 1

令第12條(有效面積의 算定方法)

① 法第18條第1項에 規定하는 居室의 窓 기타의 開口部로서 採光을 爲한 部分의 面積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開口部의 部分에 對하여 이를 算定한다.

1. 隣地境界線 또는 同一地內의 다른 建築物 또는 當該建築物의 다른 部分에 面하는 開口部의 部分으로서 그 開口部直上에 있는 建築物의 各部分(開口部의 直上垂直面으로부터 後退 또는 突出部分이 있을 境遇에는 그 部分을 包含하여 半透明의 채양 기타 採光上 支障이 없는 채양이 있을 境遇에는 이를 除外한다)으로부터 그 部分에 面하는 隣地境界線 또는 同一地內의 다른 建築物 또는 當該建築物의 다른 部分의 對向部까지의 水平距離를 그 部分으로부터 開口部까지의 垂直距離로 除한 比率이 다음의 表의 比率 以上인것.

地 域		比 率
(1)	住 居 地 域	10分之 4
(2)	工 業 地 域	10分之 2.5
(3)	商業地域 또는 地域의 指定이 없는 區域	10分之 2

2. 前號의 (2) 또는 (3)의 地域 또는 區域內에 있어서의 隣地境界線 또는 同一地內의 다른 建築物이나 當該建築物의 다른部分에 面하는 開口部의 部分으로서 同號에 規定하는 水平距離가 5미터 以上인것.

3. 道路, 公園, 廣場, 河川 기타 이와 類似한 空地 또는 水面에 面하는것.

② 天井의 採光에 有效한 部分의 面積은 法第18條第1項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는 그 面積의 3倍의 面積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③ 開口部의 外側에 幅90센티미터 以上の 마루, 기타 이와 類似한 部分이 있을 때에는 그 採光에 有效한 部分의 面積은 法第18條第1項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는 그 面積의 10分之 7에 面積을 가진 것으로 이를 본다.

以上 3個條는 居室의 窓, 기타 開口部의 晝光 또는 外氣를 받아들이기 爲한 必要한 面積에 對한 規定이다. 이 中 換氣에 對한 것은 法第18條第2項 및 第3項이다.

(i) 居室의 採光에 關해서는 法第18條第1項과 令第11條의 規定에 依해서 다음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

바닥面積에 對한 開口部의 有效採光 面積의 比率	
居室의 種類	比率
(1)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의 教室	$\frac{1}{5}$ 以上
(2) 病院 또는 診療所의 病室, 寄宿舍의 寢室 또는 旅館의 宿泊室, 住宅의 居室	$\frac{1}{7}$ 以上
(3) (1), (2) 以外의 居室	$\frac{1}{10}$ 以上

隨時로 開放할 수 있는 미다지로 區劃된 2個의 居室은 1個의 居室로 본다.
法第18條의 但書에 揭記한 居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令第12條와 法第18條第1項은 採光에 「有效한 部分의 面積」의 算定方法이다.

그 第1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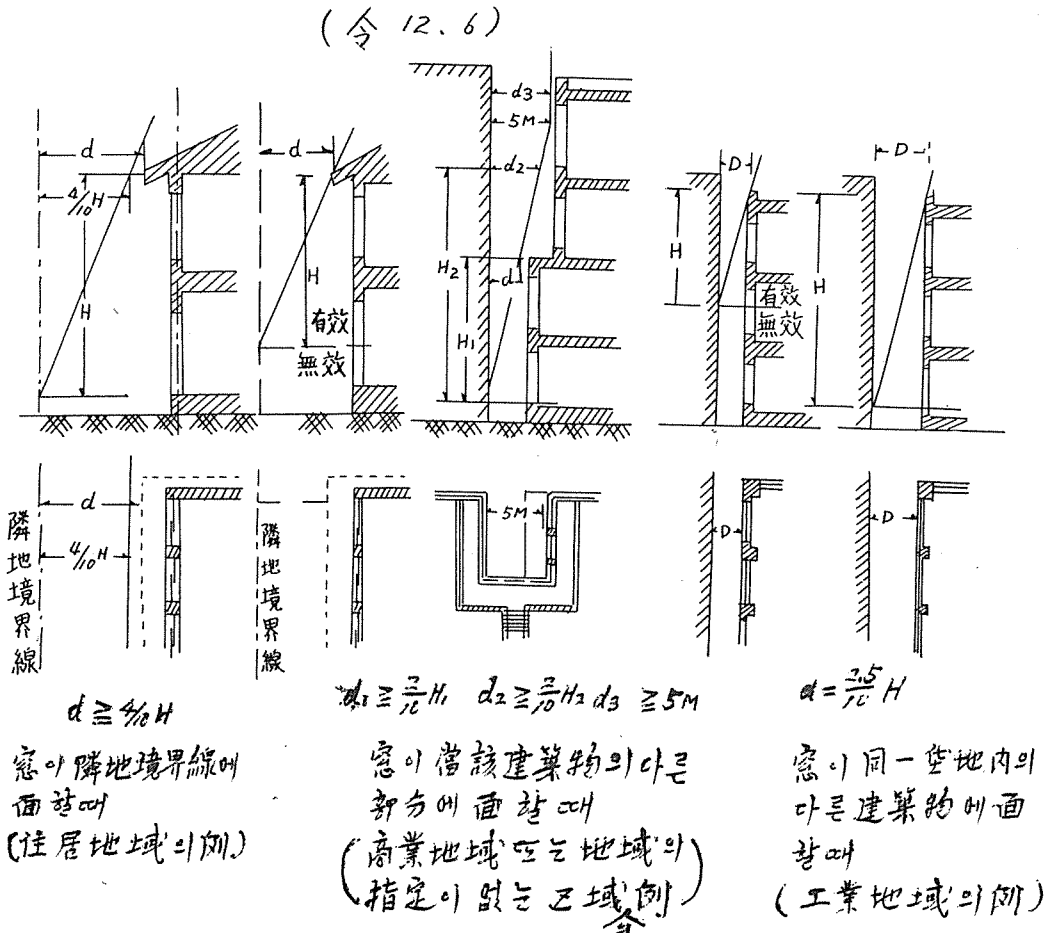
- a. 建築物이 있는 場所의 用途地域의 種別
b. 開口部와 (1) 隣地境界 (2) 同一地內의 다른 建築物 (3) 當該建築物의 다른 部分과의 位置의 關係에 依해서 算定하는 方法이다.

다음 그림은 開口部가 있는 壁面에 直角인 垂直 断面에 있어서 「採光에 有效한 部分」의 限界를 表示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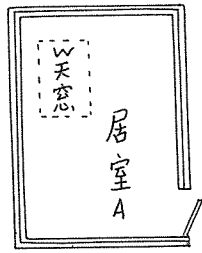
(ii) 居室의 換氣에 關한 規定은 法第18條第2項第3項에 規定하고 있다. 建築物의 用途, 所在地의 用途地域의 種別에 關係없이 一律의으로 規定하고 있다.

開口部의 換氣에 有效한 部分의 面積의 算定方法에 對해서도 特別한 規定은 없으나 普通의 窓에 있어서는 미다지를 다 열었을 때에는 外氣의 流通할 수 있는 部分의 面積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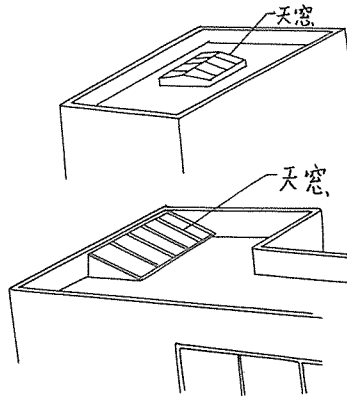
붓박이의 部分의 面積은 包含하지 아니한다.



(令 1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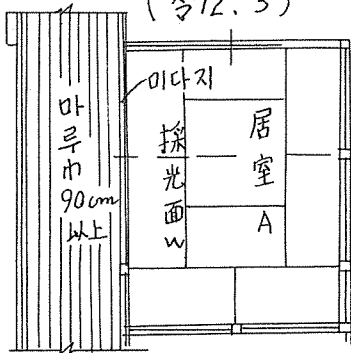


$W \times 3 \geq A \times \frac{1}{6}$
 W : 天窗面積
 A : 居室 바닥面積



(採光面이 天窗에 있을 때)

(令 12. 3)



$$W \times \frac{7}{10} \geq A \times \frac{1}{6}$$

W : 採光面積
 A : 居室 바닥面積

(採光面의 外側에 마루가 있거나
 이와 類似한 部가 있을 때)

例 1 : 工業地域안에 있어서 다음 그림과 같은 断面의 窓으로서 採光에 有效한 部分의 面積은 얼마인가?

但 窓의 幅은 2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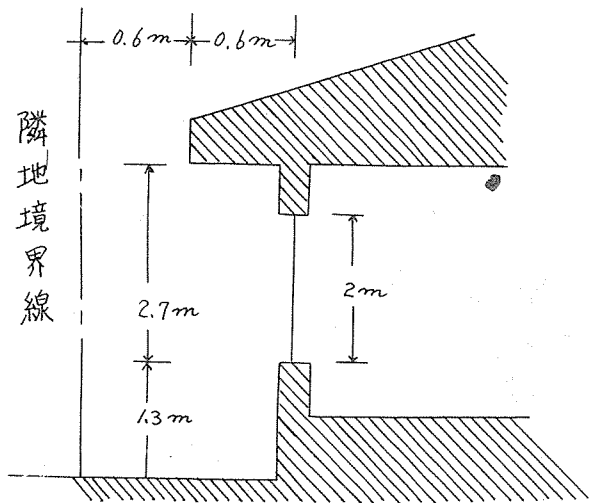
解 : 令第12條第1項第1號에 依해 $0.6m = \frac{2.5}{10} H$ 式에서 有效한 窓의 높이를 算出한다.

即 $H = 2.4m$

$2.7m + 1.3m - 2.4m = 1.6m$ 窓下端으로 본다.

$2m + 1.3m - 1.6m = 1.7m$ 有效窓高

$1.7m \times 2m = 3.4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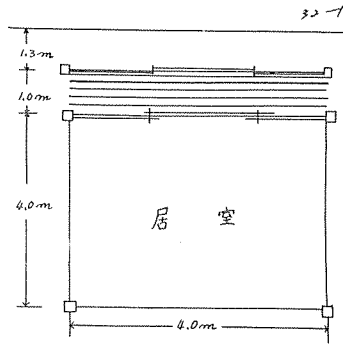
例 2, 그림과 같은 居室의 마루側부터 有效한 採光面積은 얼마인가?

但 開口部內의 值數 높이 1.75m 幅 4.0m

解: 法第18條 및 令第12條第3項에 依해 $\frac{7}{10}$ 임으로
로,

$$1.75m \times 4.0m = 7m^2$$

$$7m^2 \times \frac{7}{10} = 4.9m^2$$



例 3, 地域의 指定이 없는 區域안에 있는 그림과 같은 断面의 住宅의 居室은 開口部 A의 有效採光面積이 얼마인가?

但 開口部A 및 마루側 유리窓 部分의 值數는 幅 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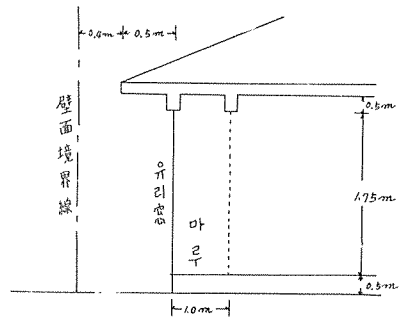
解: $0.4m = \frac{2}{10}H$ 即 $H = 2m$

$$0.5m + 1.75m + 0.5m - 2m = 0.75m$$

$$1.75m + 0.5m - 0.75m = 1.5m$$

$$1.5m \times 4m = 6m^2$$

$$6m^2 \times \frac{7}{10} = 4.2m^2$$



法第19條 (住宅의 居室設置의 禁止)

住宅의 居室은 地下層에 設置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換氣 기타 衛生上 支障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規定은 保健上 重要問題이다. 但書 規定에 依하여 換氣 기타 衛生上 支障이 없을 때에는 居室을 地下層에 設置하여도 좋도록 되어 있다.

